

[국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8’을 발표하다

유현우*

2018년 4월 24일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음악 시장의 현황을 조사한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8(Global Music Report 2018)’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세계 음악 시장은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 8.1% 성장하며 3년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매출은 173억 달러(한화 약 18조 5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목할 만 한 점은 국제음반산업협회가 199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스트리밍을 통해 발생한 수입이 전체 음악 시장의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리밍을 포함한 디지털 음원의 수입이 94억 달러로 전체 음악 수입의 54%를 차지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음악 시장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임.

□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8

- 2018년 4월 24일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음악 시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8(Global Music Report 2018)’를 발표하였음.
 - 이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총 매출은 173억 달러(한화 약 18조 5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전년의 160억 달러 대비 8.1% 성장한 것으로서 최근 전 세계 음악 시장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년도 5.9% 성장에 이어 국제음반산업협회가 199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매출액은 음악 시장 역사상 최고치였던 1999년의 252억 달러의 68.4% 밖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임.

□ 주요 내용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음악 시장 성장의 원동력은 스트리밍을 통한 음악 소비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2017년 한 해 스트리밍을 통한 매출은 전년의 약 47억 달러 대비 41.1% 증가한 66억 달러로 조사되었음. 이는 2017년 전체 음악 시장 매출의 38%에 해당하는 수치임.
 - 광고기반 서비스(ad-supported services) 이용자들은 전체 음악 오디오 스트리밍 청취자(total music audio streaming audience)의 수를 2억 7,200만 명으로 끌어 올렸으며, 전년 대비 41% 증가한 56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을 통한 음악 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악 유료 서비스의 가입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한 해에만 6,400만 명의 유료 가입자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전체 음악 유료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총 1억 7,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올해 보고서에서 스트리밍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단일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 스트리밍을 통한 매출이 전체 음악 시장의 33%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국제음반산업협회가 199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 세계 음악 시장의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YouTube와 같은 비디오 플랫폼에서 소비된 음악을 감안하면 스트리밍이 전체 음반 회사 수입의 38% 이상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스트리밍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음원의 수입은 2017년 한 해 94억 달러로 전체 음악 수입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음원 수입이 전체 음악 시장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임.
 - 32개 조사 대상 시장에서도 스트리밍을 포함한 디지털 음원 수입이 전체 음악 시장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 유형적(physical) 음반의 판매 수입은 52억 달러로 전 세계 음악 시장 수입의 30%를 차지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5% 감소한 수치임.
- 다운로드 방식을 통한 수입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18억 달러로 조사됨. 이는 2015년의 30억 달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절반에 불과한 액수로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한 음악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전 세계 음악 시장의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지역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13% 증

가하였으며, 특히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수입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음.

- 유럽 지역의 음악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 세계 음악 시장의 Top10, Top5¹⁾에 속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는 전년 대비 9% 성장하였음. 이들 국가의 음악 시장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및 호주의 음악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7.7%, 5.4%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망 및 평가

- 이번 보고서에서는 유료 스트리밍 등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음악 소비의 전 세계적인 증가세와 음성 제어 장치(voice-controlled devices)의 미래 잠재력 및 최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거물들과의 라이선스 계약 등의 이슈에 주목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슈들이 음악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동 보고서는 중국, 아프리카, 인도,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의 음악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조명하면서 전 세계 음악 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과 같은 기기의 보급과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지적해 왔듯이 동 보고서에서는 ‘가치 격차(value gap)’²⁾ 문제가 음악 산업의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음악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YouTube의 저작권자에 대한 낮은 로열티 지불 등과 같은 ‘가치 격차’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설시하였음.
 - 이러한 ‘가치 격차’문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한 해 광고 기반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ad-supported audio streams)의 유료 이용자 2억 7,200만 명이 55억 6,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과 대조적으로 YouTube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video streams) 서비스의 경우는 전체 13억 명의 이용자가 불과 8억 2,600만 달러의 매출밖에 창출하지 못한 경우임.

□ 참고 자료

- * <https://bit.ly/2xk5jUP>
- * <https://bit.ly/2INCntT>
- * <https://bit.ly/2JewpBO>

1)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영국, 5위 프랑스, 6위 대한민국, 7위 캐나다, 8위 호주, 9위 브라질, 10위 중국

2) 음악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매출 확대가 창작자 및 음반 회사 등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함.

[캐나다] 항소법원, TV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우회 기능을 제공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혜성*

2018년 2월 20일 항소법원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우회 기능이 있는 애드온을 제공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단순한 전송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에 규정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전기통신을 통한 저작물 전송에 있어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 사실 관계

- Adam Lackman(이하 ‘Lackman’)은 TVAddons 웹사이트의 운영자임.
 - TVAddons 웹사이트는 KODI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기능을 추가하려고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애드온(add-ons)’의 저장소임.
 - KODI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KODI를 전자기기에 설치하고 CD, DVD 디스크 뿐 아니라 MP3와 같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음.
 - 애드온을 추가 설치하면, KODI는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음.
- 이러한 애드온은 1) 이용자를 합법 웹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유형과 2) 이용자가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의 두 부류로 나뉨.
- TVAddons 웹사이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과 침해하지 않는 유형의 애드온 모두를 제공함.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TVAddons 웹사이트는 애드온 이용방법을 적은 설명서를 제작·제공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애드온들로 구성되어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형 KODI인 ‘FreeTelly’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애드온을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Indigo’라는 애플리케이션도 배포함.
- Bell Canada는 TV 프로그램을 전기통신을 통해 전송하는 회사임.

□ 당사자들의 주장

- Lackman은 TVAddon 웹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Bell Canada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함.
 - TVAddons 웹사이트는 주로 KODI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KODI와 애드온의 이용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애드온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제공할 뿐임.
 - 이러한 애드온들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게 해주는 일종의 ‘특화된 검색 엔진(specialized search engine)’으로, 애드온들이 찾아낸 콘텐츠는 구글과 같은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는 검색 결과와 같으므로, TVAddons 웹사이트는 ‘미니 구글(mini Google)’에 불과함.
 - 애드온 이용자들이 TVAddons 웹사이트에서 바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KOD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인터넷 상에서 이용하거나 스트리밍 받아야 함.
- 이에 반하여 Bell Canada는 TVAddons 웹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주장함.
 - TVAddons 웹사이트 ‘Featured’ 카테고리의 22개 애드온 중 12개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임.
 - TVAddons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애드온들은 주문형 TV와 영화 뿐 아니라 캐나다 TV 방송과 라이브 스포츠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에도 이용될 수 있음.
- Bell Canada는 Lackman이 자신의 TV프로그램을 공중에 전송하고 TVAddons.ag를 통해 이용자들이 애드온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2월 20일 항소법원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우회 기능이 있는 애드온을 제공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에 규정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함¹⁾.

1) Bell Canada v. Lackman, 2018 FCA 42 (FCA. Feb. 20, 2018).

- 구글은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진 관련도에 기초해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이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도출해내는 무차별적인 검색 엔진인 반면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애드온은 이용자가 원하는 불법 저작물을 찾아내므로 TVAddons 웹사이트가 ‘미니 구글’에 불과하다고 하기 어려움.
 - 일반적인 검색 엔진과 달리, 애드온은 무효인 링크(dead links),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 등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임.
 - 이용자는 애드온을 이용해서 불법 저작물을 보다 직접적이고 용이하며 안전하게 찾아내 이용할 수 있게 됨.
- 저작권법은 전기통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송할 권리 및 이를 허락할 권리는 TV 프로그램 창작자와 배포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됨.
-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는 애드온을 제공·배포한 행위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TV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 전송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임.
- 면책 조항인 저작권법 제2.4조 (1)항 (b)호는 전기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에 있어서 단지 중개자나 ‘전달자’로서 기능하였을 뿐 다른 전송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는 그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 전달한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중립성(content neutral)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달자’가 될 수 있음.
 - 즉 ‘전달자’는 전달한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야 함.
- TVAddons 웹사이트는 단지 정보의 중립적인 전달이라고 할 수 없음.
 - TVAddons 웹사이트는 영화 및 주문형 또는 생방송 TV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드온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TV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검색 결과를 도출해 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중립성이 인정되지 않음.
 - TVAddons 웹사이트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겨냥한 웹사이트임.
 - 애드온의 상세설명에 TVAddons가 해당 애드온을 개발, 지원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최소한 Lackman은 애드온을 선택에서 웹사이트에 배치하였으므로 전달한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

- 이 판결은 애드온 제공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사전 설치된 셋탑 박스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고 전달한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개연성이 큰 웹사이트 운영자는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달자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임.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터넷에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중전달이 아니다

박희영*

여행 잡지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복제하여 학교 수업에 발표 자료로 사용한 다음 이 발표 자료가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수익의 목적이 없었고 사진의 출처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공중전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 견해를 밝힘

□ 사실 관계

- 사진작가가 스페인의 도시 코르도바의 로마 다리를 배경으로 한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여행 잡지사에 제공함. 여행 잡지사가 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진에 자유롭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
- 독일의 고등학교 학생이 스페인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이 사진을 복제하여 발표 자료에 이용함. 그 후 학교는 이 발표 자료를 사진과 함께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함. 공개된 사진 아래에는 여행 잡지사의 홈페이지를 표시하여 사진의 출처를 밝히고 있음.
- 사진작가는 이 사진의 이용권을 여행 잡지사에게만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중전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주정부에 대하여 이 사진의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독일 하급심 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사진작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정부에게 사진의 삭제와 손해배상액 300유로를 인정함.
- 양당사자가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법원은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사진의 삭제만 인정함. 항소심 법원은 방해자 책임에 근거해서 원고의 금지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1항)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함.
- 양당사자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독일 연방대법원의 견해 및 선결 판결 요청

-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공중 전달에 해당된다는 입장임.
-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서 방문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공중으로 고려됨. 하지만 자신의 저작물이 동의 없이 업로드 되어 있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새로운 공중으로 고려됨.
-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교 서버에 해당 사진을 복제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은 링크나 프레임을 이용된 것과 구별됨.
- 공중전달의 경우 저작물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는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함. 왜냐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킬지의 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하기 때문.
-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를 통해서 사진이 이용되는 경우 영리 목적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없음.
-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요청함. 요청내용은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최종 견해

- 법무관은 2018년 4월 25일 독일 대법원의 견해와는 달리 이 사안에서 공중전달을 부정하는 최종 견해를 밝힘¹⁾.
- 법무관은 먼저 이 사안에서 전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학생의 발표 자료에 첨부된 사진은 부차적인 성격에 불과한 점, 이 사진은 이미 여행 잡지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학생은 이 사진을 수익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학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의 출처를 표기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법무관은 또한 전달의 공개성도 부정함.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그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학교 웹사이트에 발표 자료를 올린다고 해서 공중이 이 사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함.

1) EuGH, SCHLUSSANTRÄGE DES GENERALANWALTS vom 25. April 2018(1) Rechtssache C-161/17.

- 또한 법무관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5조 3항의 강의 목적의 예외규정이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학교 외부의 사람도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에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진의 업로드는 강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
- 법무관은 권리자는 이러한 공개를 통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공중전달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학교 웹사이트에서 이용되는 사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링크나 프레임 방식과는 달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공중 전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재판소 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 법무관은 학교에서 이용하는 경우 공중전달이 아니라는 최종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견해를 따를지 주목됨.

□ 참고 자료

- * <https://bit.ly/2ISkCWj>
- * <https://bit.ly/2GVDIOO>

[EU] 유럽 169개 대학 및 판사,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에 대한 반대 서명안 발표

박성진*

2018년 5월 2일, 인터넷 상에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특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의 169개 대학과 유럽의 백여 명의 판사들은,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에 대한 반대 서명안을 발표함. 이들이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안은, 언론기관에게 저작권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그들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임. 이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지침안의 내용의 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언론사 및 기타 정보기관에게 주어지는 권리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지적함. 또한, 정보 및 저작물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거짓된 정보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악영향이 있다고 비판함.

□ 배경

- 유럽 위원회는 Google News와 같은 소수의 강력한 뉴스 플랫폼과 언론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16년 발표된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안의 제11조는, 언론기관에게 저작권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이후 이 조항에 대해서 2018년 3월에 공개된 유럽 의회의 수정안은 이 권리의 적용대상 및 적용되는 권리를 확장하고자 함.
 - 첫 번째 수정내용은, 적용대상에 뉴스 에이전시(news agency)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장함.
 - 이는 뉴스 에이전시는 ‘거짓 뉴스(misinformation, 소위 fake news)’의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침안이 대상으로 했던 언론사들과 같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 두 번째 수정내용은, 이들에게 정보사회 지침¹⁾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뿐만 아니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²⁾이 규정하는 배타적 대여 및 대출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배포권을 부여하는 것임.
 - 세 번째 수정내용은, 언론 발행기사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양도 불가능한 보상금 청구권의 창설임.
- 유럽 전역의 인터넷 상의 지식재산권, 인권 및 저널리즘에 특화된 169개 대학은, 2018년 5월 2일, 이러한 지침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백여 명의 판사들 또한 이러한 지침안의 내용을 비판함.

□ 기존 지침안에 대한 성명서의 비판

- 이 성명서는, 이 지침안의 내용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함.
 - 모든 미디어는 유럽인권보호조약 및 유럽기본권헌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
 -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창설은 정보의 작은 일부분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창작 행위를 저해하고 특히 소규모 저널리즘의 성장과 혁신을 제지할 뿐이라는 비판임.
- 또한 회원국 대부분의 언론 기관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재산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창설은 불필요함.
- 나아가 언론기사 거래비용을 과도하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이 지침안은, 사실상 아주 파편적인 언론기사의 모든 이용행위도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음.
 - 이로 인해서 현재 유럽의 신문기자, 사진기자, 시민기자 및 점차 성장하고 있는 프리랜서 기고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임.
- 이 지침안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자들은 소수의 대형 언론사들로서, 현재에도 이미 발생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것임.
 - 이 성명서는, 이미 언론사들이 그들의 발행물에 대해서 저작권 혹은 배타적 발행권 등과 같은 다양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1) Directive 2001/29/EC

2) Directive 2006/115/EC

- 특히 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ui generis 권리에 따라서, 언론기사 전체를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사 중 실질적이지 않은 일부분을 추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분석임.

○ 이 조항은 오히려 '거짓 뉴스'의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 만약 언론사들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어 이용자들이 양질의 뉴스기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뉴스 기사를 소비하고 공유할 것이라는 예측임.

- 이로 인해, 이 지침안은 거짓 뉴스 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측함.

○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럽의 언론사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이 새로운 권리의 경제적인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한 상황임.

□ 수정안에 대한 성명서의 비판

○ 이 성명서는, 나아가, 뉴스 에이전시는 언론 기사를 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반적인 언론기관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수정안의 첫 번째 내용을 비판함.

○ 수정안의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기사가 서적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전자대출과 같은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에게 배타적 대여 및 대출권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어문저작물에게 할당되는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수정안의 마지막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기관이 자신의 기사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입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비판함.

□ 참고자료

* <https://bit.ly/2GgoeiK> <https://bit.ly/2r3a1QD>

* <https://bit.ly/2sdAqMS>

* <https://bit.ly/2kvYMNC>

[독일] 법원,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에서 전시회 사진을 포스팅하면 전송권을 침해한다

박희영*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관리자가 전시회 사진을 공개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공개 그룹이라 하더라도 390명의 회원은 공중에 해당되고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사진의 공개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들은 힌터카이펙의 전설(Mythos Hinterkaifeck)이란 전시회의 큐레이터들임. 이 전시회는 2016년 9월 바이에른 주 군사박물관의 경찰박물관 부서에서 개최됨.
- 피고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인 힌터카이펙의 관리자임. 이 비공개 그룹은 약 39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룹의 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원고들의 전시회와 피고의 페이스북 그룹은 1922년 3월 31일 발생한 역사적인 살인사건인 힌터카이펙 사건을 다루고 있음. 이 사건은 힌터카이펙이란 농장에서 일가족 6명이 곡괭이로 무참하게 살해된 것으로 지금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사건임. 이 사건은 지금도 일반인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 사건을 방송에서 자주 다루어 왔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어 여러 번 상영됨.
- 원고들은 이 살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www.hinterkaifeck.net)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용자들이 올린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함.
- 원고들은 전시회 방문자들이 그 당시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콘셉트를 설정함. 이러한 콘셉트에 맞추어 전시회는 3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있음. 첫째, 사건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건을 배열함. 둘째, 사건의 상황을 설명함. 셋째, 그 당시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룸.
- 피고는 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촬영한 119장의 사진을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포스팅함. 이 사진에는 전시회에 전시된 텍스트와 그래픽 차트도 포함되어 있음.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원고가 피고에게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페이스북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여 페이스북이 삭제함.
- 전시회의 일부 사진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서 피고의 비공개 그룹에 공개되기 이전에 언론에 공개됨. 피고도 이전의 다른 전시회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미 소장하고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근할 수 있었음. 전시회의 그래픽 차트의 일부도 이미 2011년 제3자에 의해서 작성되어 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음.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전시회의 콘셉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4조의 편집저작물이고, 전시회의 구성 및 개별적인 그래픽 요소들은 제2조 1항 4호의 미술저작물이며, 직접 작성한 텍스트는 제2조 1항 1호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피고가 비공개 그룹에 사진들을 포스팅하여 자신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전시회는 이미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한 것으로 독창적인 콘셉트라고 볼 수 없고 사진이나 그래픽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미 공중에 접근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 지방법원의 판결

- 뮌헨 지방법원은 2018년 1월 31일 원고의 전시회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비공개 그룹에 전시회 사진을 포스팅한 행위는 원고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¹⁾.
- 일반적으로 전시회의 개별 요소들의 선택이나 배열이 인간의 지적 창작물인 경우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 이 경우 전시 대상과 이와 결합된 텍스트의 선택, 배열 및 배치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 표현되어야 함. 하지만 편집된 대상이 우연히 전시되어 창작물로 표현된 경우에는 전시회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음.
- 또한 전시회가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시회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들, 즉 사실에 관한 정보 혹은 제삼자의 개별 저작물이 편집되어 있거나 이미 언론이나 관련 포럼에서 공개되어 있는지는 중요 하지 않고 이들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만이 중요함.
-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전시회는 대상들을 우연히 편집한 것이 아니라 전시회 방문자가 그 당시 수사에 참여하였던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특별한 창작성을 표현하고 있음.
- 피고는 전시회에 전시된 119개의 사진을 촬영하여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포스팅하여 원고의 공중전달권(저작권법 제19a조)을 침해함.

1) LG München I, Urteil vom 31.01.2018 - 37 O 17964/17.

- 공중전달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다수의 구성원에게 접근되어야 함. 비공개 그룹의 약 390명의 회원은 공중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회원 가입을 결정하는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은 사람의 범위가 특정되어 제한되어 있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하지만 피고의 비공개 그룹의 경우 피고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성이 인정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전시회가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중 접근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판결은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의 관리자에게 사진의 공개에 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 <https://bit.ly/2jnKeiq>
- * <https://bit.ly/2L0zPFb>

[스페인] 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다

박경신*

집중관리단체가 계약을 통해 모든 유형의 저작물 이용이나 저작물 전체 또는 장래 창작될 저작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권리자에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스페인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다국적 라이선싱을 허용하고,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국왕령이 2018년 4월 15일 시행됨.

□ 배경

- EU 내에서 설립된 모든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될 투명성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집중관리단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음악저작물의 다국적 라이선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EU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¹⁾이 2014년 4월 9일 발효됨.
-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동 지침 발효 후 2년 내에 동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동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하는 국왕령²⁾이 2018년 4월 15일 시행됨³⁾.

□ 주요 내용

- 권리자는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이나 권리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집중관리단체에 관리를 위임한 권리의 종류와 저작물 유형을 서면 계약을 통해 명시되어야 함.
 - 해당 계약은 모든 유형의 저작물 이용이나 저작물 전체 또는 장래 창작될 저작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강제할 수 없음.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센터 디렉터

1)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2) Real Decreto-ley 2/2018, de 13 de abril, por el que se modific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aprobado por e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y por el que se incorporan al ordenamiento jurídico español la Directiva 2014/26/UE del Parlamento Europeo y del Consejo, de 26 de febrero de 2014, y la Directiva (UE) 2017/1564 del Parlamento Europeo y del Consejo, de 13 de septiembre de 2017.

3) 동 국왕령은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EU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지침 이행을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새로 도입함.



- 집중관리단체는 징수 사용료와 사용료의 투자로부터 창출된 수입에 대한 관리 수수료 및 기타 공제 비용을 계약 체결 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집중관리단체는 사용료 효율, 할인,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기준에 있어서 회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됨.
- 권리는 집중관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업적 목적의 라이선스를 직접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권리와 집중관리단체 간의 계약은 최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함. 권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임한 권리 및 저작물의 유형 등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음.
- 동 국왕령 시행일 당시 스페인 내에서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립관리단체⁴⁾는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문화체육부장관에서 업무 개시를 통지해야 함. 시청각녹음물 제작자, 음반제작자, 저작자나 실연자의 매니저나 방송국이나 시청각녹음물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은 독립관리단체로 간주될 수 없음.
 - 집중관리단체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독립관리단체는 영리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함.
 - 집중관리단체와 달리 독립관리단체는 업무 개시를 위하여 교육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감독을 받음.
- 스페인 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해외 집중관리단체는 스페인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스페인 내에서의 업무 개시를 교육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스페인 집중관리단체는 스페인 국내외에서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상 이용에 대한 다국적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
 - 다국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는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관련 레퍼토리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저작물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사용자들에게 청구서를 발송할 수 있는 능력,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
- 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단체의 의사결정기구로부터 독립된 내부 감독 기관을 설립해야 함.

4) EU 집중관리단체지침 제3조 제b항은 '독립관리단체'를 법으로 혹은 양도, 라이선스, 기타 계약상의 합의를 통해 복수의 권리자를 대신하여 권리자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혹은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그들의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권리자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전부나 일부를 소유 또는 지배하지 않고, 영리 기반으로 조직된 모든 기관으로 규정함.

-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총회는 내부 감독 기관의 구성원을 지명하며 이들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집중관리단체는 다음의 수입들을 각각 분리해서 관리해야 함: i) 징수한 사용료 및 사용료의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ii) 집중관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 자산 및 고유 자산, 할인, 기타 공제, 기타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 집중관리단체는 세무 재정 관리 정보를 명시한 연례 투명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연락처, 관리를 위임한 권리, 해당 권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 권리자에게 지급한 사용료, 권리의 사용 시기, 관리 수수료 공제 금액, 미지급된 권리 수익을 비롯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매년 제공해야 함.

○ 교육문화체육부장관은 집중관리단체 및 독립관리단체의 적격 및 자격 상실 확인, 해당 단체의 정관 개정 승인, 스페인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집중관리단체와 스페인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관리단체가 발송한 업무 개시 통지의 수령을 담당함. 집중관리단체와 독립관리단체에 대한 조사, 관리 및 감독은 해당 단체가 통상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Comunidad Autonoma)가 담당함.

○ 집중관리단체나 독립관리단체가 저작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벌금 조치가 내려짐.

-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에서 5년 이내임.

- 벌금 액수는 벌금 부과일 기준 당해 연도에 해당 단체가 징수한 총 사용료의 1%에서 2% 사이이며 당해 연도에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400,001유로 이상 800,000 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개정을 통하여 권리자들이 집중관리단체에 권리의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확인받음.

○ 이번 개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해 투명하고 적절한 재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는 동 국왕령 발효 후 1년 이내에 동 시행령을 반영하여 개정된 정관을 승인하여야 하며 다만 2017년 징수 사용료가 1억 유료를 초과한 집중관리단체는 3개월 이내에 동 국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를 준수해야 함.

□ 참고 자료

- * <https://www.boe.es/boe/dias/2018/04/14/pdfs/BOE-A-2018-5059.pdf>
- * <https://bit.ly/2Lz9lqf>
- * <https://bit.ly/2KWhhpM>

[일본] 정부,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 결정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해적판 사이트 열람방지조치(이하 '블로킹'¹⁾)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법 제도를 정비하기 전까지 임시적 긴급조치로서 특히 악질성이 높은 3 사이트 및 이와 동일한 수준의 사이트에 한해 블로킹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을 결정함.

□ 배경

-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 쿨 재팬을 견인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기대되지만 인터넷상의 해적판 피해가 이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에는 운영관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요청조치 할 수 없는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출판사(이하 '저작권자등')의 권리 침해가 특히 문제되고 있음.
 - 만화마을(漫画村), Anitube, Miomio 등 특히 악질성이 높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던 전자만화시장의 매출이 급감함.
- 일본 정부는 해적판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콘텐츠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콘텐츠 창작 의욕이 저하하는 한편, 주요 이용자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건전하게 콘텐츠를 즐기는 규칙을 망각하거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저작권자등의 권리 침해 확대를 막기 위해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를 블로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이하 '긴급대책')을 결정함.

□ 사이트 블로킹에 대한 입장

- 사이트 블로킹은 형식적으로 통신의 비밀(헌법 제21조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1) 원어 표시로는 閲覧防止措置 (ブロッキング)이다.

- 그러나 사이트 블로킹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① 저작권자등의 정당한 이익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콘텐츠가 상당 수 업로드 된 상황에서 ② 삭제나 검열 등 다른 방법으로는 저작권자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한편, ③ 그 수법 및 운용이 통신의 비밀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 않고 ④ 해당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자등의 권리 침해가 현저한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로서 긴급피난(형법 제37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 다만 사이트 블로킹은 통신의 비밀 외에도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 열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음.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사이트 블로킹이 저작권자등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 외에 위법·유해 정보 일반에 관한 열람 방지 조치로서 남용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고 밝힘.
- 그 때문에 긴급대책에서는 사이트 블로킹 대상을 긴급피난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 즉,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로 한정함. 또한 사이트 블로킹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임시적이고 긴급적인 조치임을 밝힘.

□ 긴급대책

- 이번의 긴급대책은 임시적이고 긴급적인 조치로서 특히 악질성이 높은 만화마을, Anitube, Miomio의 3 사이트 및 이와 동일한 수준의 악질성을 지닌 사이트만을 블로킹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음.
- 사이트 블로킹은 어디까지나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적절한 관리 체제 하에 실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가 문제되는 경우 신속하게 그 블로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식재산전략본부 하에 관계사업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고 필요한 체제 정비를 행할 계획임.
- 사이트 블로킹 여부는 사이트 개설 목적, 저작권자등의 권리 침해 콘텐츠의 수량, 발신자의 동일성²⁾, 다른 실효적인 대체수단의 부존재³⁾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2) 발신자의 동일성이란 특정 도메인 내에 복수의 사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각 사이트의 관리자가 동일인가를 말하는 것임.

3) 해적판 사이트가 저작권자등의 권리행사나 삭제요청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거나 침해자 또는 운영자를 특정할 수 없어 권리행사나 삭제요청 자체가 곤란한 경우, 형사소추 되었음에도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향후 과제

- 일본 정부는 악질적 해적판 사이트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법제도 정비⁴⁾, 리치 사이트 관계 법제도 정비, 책 저작물 다운로드 위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검토할 계획임.
-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의 침해 콘텐츠 삭제 요청과 같은 대처나 광고 금지처럼 침해자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대처 외에, 인터넷상의 해적판 유통·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사업자, 관련단체가 연계하여 학교나 지역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상의 해적판을 이용하는 것이 창작자의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참고 자료

-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honpen.pdf>
-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180413/siryu3.pdf>
- * <http://www.topics.or.jp/articles/-/41488>

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SP 사업자에게 사이트 블로킹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할 계획임. 주요 논점은 대상이 되는 해적판 사이트 선정 기준, 최적의 절차(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방법 등임.

[중국] 축구 생중계 방송은 저작권이 없다.

백지연*

베이징시 지식재산법원은 2018년 5월, 축구 생중계 방송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음. 법원은 생중계 영상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유체물에 고정이 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함. 하지만 축구 중계방송은 저작권법상 '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음.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중국슈퍼리그¹⁾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독점적으로 방영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 원고는 중국슈퍼리그가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피고는 피고의 온라인플랫폼에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두 시즌에 해당하는 중국슈퍼리그 생중계 영상을 방영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해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음.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원고가 방영한 영상은 화면의 선택, 편집, 구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²⁾.
- 피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10월 29일 베이징시 지식재산법원에 항소함.

□ 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30일 베이징시 지식재산법원은 축구 중계 영상은 저작권법상 '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시함³⁾.
- 일반적으로 중국슈퍼리그와 같이 공중 신호를 바탕으로 한 연속적인 화면이 영화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고정'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함. 첫 번째 '고정'의 요건을 만족하려면 전체 경기가 유체물에 고정이 되어야 함. 하지만 생중계 화면의 경우 전체 경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화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 비로소 '고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북경대학교 법학석사

1) Chinese Super League(약칭 CSL), 중국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프로축구리그

2) 新浪公司诉天盈九州公司侵犯著作权及不正当竞争纠纷案 (2014) 朝民(知)初字第40334号

3) 新浪公司诉天盈九州公司侵犯著作权及不正当竞争纠纷案 (2015) 京知民终字第1818号

- 두 번째 ‘창작성’ 요건의 경우, 경기 생중계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경기의 흐름, 생중계의 실시간성, 중계팀의 수준, 관중의 호응, 공중 신호 제작의 표준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 이 중 창작자가 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소재의 촬영 각도, 화면의 선택, 편집 등에 한정되어 있어 극히 제한적임. 그러므로 생중계 영상의 창작성은 영화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본 판결내용 공개 후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경기 생중계와 같이 공중 신호를 바탕으로 한 연속적인 화면의 저작물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견해를 밝힘. 저작물의 ‘창작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지될 수 있는 개성화이며, 생중계라는 창작의 형태가 이러한 기준에 있어 본연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영상제품과 영화저작물을 나누는 기준은 창작성의 유무가 아닌 정도이며 생중계 영상이 ‘고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영상제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김.

□ 참고 자료

- *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8/04/id/3281595.shtml>
- * http://www.sohu.com/a/226864823_534582

[호주] 정부, 2017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석을 확장하다

박성진*

2017년 호주 정부는, 교육·문화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후 호주 정부는, 교육적·문화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제한(Safe harbour)의 적용범위에 들도록 확장함. 이번 개정 이후, 호주의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장될 예정임. 이를 통해서 호주는, 호주 책임제한 조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수준에 정합시키고자 함. 이 개정안은 201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상원의 제3독회를 통과하였으나, 현재 하원에서 계류 중임.

□ 호주 저작권법 개정의 내국법적 맥락

- 현행 호주 1968년 저작권법은, 캐리지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 이하 CSP)에게 그의 이용자들이 행한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면책받기 위한 책임제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호주의 CSP는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혹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호주 1997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elecommunication Act 1997)에서 지칭하는 CSP란 다음의 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이룸:
 - 공중에게 음성 혹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소유자; 혹은,
 - 공중에게 음성 혹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인의 네트워크 유닛을 이용하는 자.
- 이와 같이 CSP 정의가 다소 한정적인 탓에, 현재까지 호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맥락에 따라, 작년 호주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해 그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철회한 바 있음¹⁾.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1) 유현우, “[호주]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던 움직임이 있었으나 철회되다”, 저작권 동향 2017년,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3면 참조.

○ 그러나 2017년 12월 6일 호주 정부는, CSP에 덧붙여서,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도입한 저작권 개정안을 발표함.

- 이 개정안은 201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3독회에서 호주 상원을 통과하였음.

□ 호주 저작권법 개정의 해외 통상적 맥락

○ 호주는 2018년 3월 8일에 있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²⁾의 가맹국임. 제18.82조에 따른 변화임.

○ 이 협정 제18.81조와 제18.82조는 ISP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제18.82조에 따르면 11개 가맹국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권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시에, 가맹국들은 ISP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제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해야함.

○ 이러한 협정의 맥락에서, 호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호주 책임제한 조항의 수준을 이 협정의 수준에 맞추고자 함.

□ 호주 개정 저작권법 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 이번 개정에서 호주는 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임.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캐리어 서비스 제공자;

-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 직접 혹은 상호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공중이 장서에 접근하거나, 혹은 국회의 구성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관장하는 기관;

- 아카이브를 관장하는 기관;

- 핵심적인 문화시설을 관장하는 기관;

- 교육시설을 관장하는 기관.

2)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서비스 제공자가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관련 도서관, 아카이브, 핵심 문화 시설 및 교육시설과의 일련의 관계 속에서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라면,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평가

-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들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던 이 개정안은, 정작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을 포섭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음.
 -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불법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조장하지 않은 데이터 송신 서비스, 캐싱(caching) 서비스, 저장(hosting)서비스 및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찾는 정보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측은, 이번 개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함.
 - 이들에 따르면, 책임제한 조항은 온라인에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자들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함이나, 이번 개정은 이러한 목적에 달성하고 있지 못함.
- 동시에, 본디 이 개정은 호주의 창작자 집단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이번 개정의 이와 같은 한정적인 확장은, 창작자 집단의 승리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호주 정부가 이미,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대상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선부른 평가를 자제하는 입장도 존재함.

□ 참고자료

- * <https://zd.net/2IIL4Vk>
- * <https://bit.ly/2sek46Q>
- * <https://bit.ly/2JbbOhu>
- * <https://zd.net/2IRqX8n>